

「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5. 2. 16. 개정 판 (시행 2015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79/compare?from=190&to=192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2:42:2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연구윤리심의내용)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.	제3조(연구윤리심의내용)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. <u>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</u> <u>1.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</u> <u>2. 연구 윤리 규정에 제·개정 사항 <신설 2016-02-29></u>
제6조(구성)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회가 <u>겸직으로 하며,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u> 단,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둔다. <개정 2015-02-16>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 단,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. <개정 2015-02-16>	제6조(구성)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을 <u>당연직으로 한다.</u> <개정 2016-02-29> 단,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<u>평교수위원(5), 연구팀장(서기), 외부위원(1)으로 구성한다.</u> <개정 2015-02-16><개정 2016-02-29>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. 단,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. <개정 2015-02-16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연구윤리심의내용)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.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

1.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
2. 연구 윤리 규정에 제·개정 사항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. 단,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평교수위원(5), 연구팀장(서기), 외부위원(1)으로 구성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